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1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나20134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1350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퍼스트

담당변호사 양동혁, 홍승재, 김한별, 전담샘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 가디언즈

담당변호사 윤석진, 이수련

변론 종결 2022. 10. 26.

판결 선고 2022. 11. 23.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단1350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8. 11. 2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13. 접수 제871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가. C은 2001. 8. 30. 기업은행, 2001. 10. 22. J은행, 2001. 10. 29. K은행과 각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은행들은 2003. 10. 24. L 주식회사에게 C에 대한 채권 13,597,065원(= 기업은행 5,999,991원 + J은행 6,180,418원 + K은행 1,416,656원)을 양도하였고, L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C의 아버지인 D 소유였는데, 2018. 11. 26. D이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인 피고(D의 배우자이자 C의 어머니, 상속지분 3/9), C, E, F(이상 각 상속지분 2/9)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6. 1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접수 제87102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무자력인 채무자 C이 이 사건 분할협약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2/9 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C의 각 2/9 상속지분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각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2, 1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M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C을 상대로 이 사건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며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소80255호 양수금사건에 대하여 제1심법원에서 원고가 승소(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하였고, 제1심판결에 대한 C의 추완항소로 진행된 의정부지방법원 2021나207541 항소심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2022. 7. 12. "① 필적감정서 등 C이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기업은행과 J은행 각 입회신청서(갑 제12, 13호증) 중 C 이름 부분을 C이 직접 작성하였다거나, C의 배우자인 I가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거나, I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고, ② K은행과 관련하여 C이 직접 또는 I가 적법한 대리권에 기초하여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③ 필적감정서 등 C이 제출한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또는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C이 직접 또는 I가 C을 대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무조정 요청을 하거나 일부 변제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항소심판결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과 위 판결을 배척할 만한, 즉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추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결국 채권자취소권의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태안

판사윤경아

판사박남천

별지